

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				
의	회	사	무	국
위	원	회	제	안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
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연월일	2026. 9. 2.
제안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6. 9. 2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위원회 운영상 “간사”로 표기된 직책을 실제 수행 기능에 부합하는 “부위원장”으로 정비하여, 조례의 용어 사용을 통일하고 직책에 따른 책임과 위상을 명확히 하려함.

2. 주요내용

- 제6조(발언 및 변명)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

3. 규칙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
나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다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구미시의회규칙 제 호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발언 및 변명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<u>간사와</u>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.	제6조(발언 및 변명) ①·② (생략) ③ ----- ----- ---- <u>부위원장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